

국외부재자 신고 안내

□ 신고대상

-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
- 국내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거나
-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중
-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(19세 이상 국민, 1993. 4. 12. 이전 출생자)

□ 신고기간

2011. 11. 13. ~ 2012. 2. 11.(91일간)

□ 제출서류

- 국외부재자신고서
- 여권사본
 - ※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 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.

□ 제출처

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, 시장·군수·구청장

- ※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국내에서 신고하는 사람(국내체류자)은 주소지(국내거소신고지)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
□ 제출방법

인편(방문) 또는 우편

- ※ 우편신고 시 비용 개인 부담

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**대한민국**의 얼굴입니다

